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2020. 10. 27.)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0-135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0년 10월 12일(월)
- 라. 회부일자: 2020년 10월 13일(화)

2. 제출사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작성하고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및 주요기능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 허성관)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나. 출연 필요성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고, 매년 일정 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여야 하는바,
-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경우,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 우리 구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법정출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함.

다.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

- 2021년도 출연금: 16,098천 원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및 부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2019회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만분의 1.3 (0.013%)을 출연금으로 배정
- ※ 2020.9.8. 지방세기본법 개정 공포 (대통령령 제30994호)

4. 관련법규

-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나.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 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5. 검토의견

-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본 계획안의 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2019 회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0.013%)에 해당하는 16,068천 원을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코자 함이며,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고 출연 목적에도 합당하므로 출연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재정역량의 강화를 위해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재정정책의 연구는 물론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소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사무의 지원 등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참고자료】

「지방세기본법」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

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994호, 2020.9.8.,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